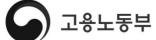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I. 과정평가형 자격 설명회 자료 ······· 1
Ⅱ.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서 작성 매뉴얼 ·············· 63
Ⅲ. 과정평가형 자격 O&A ········ 103

I. 과정평가형 자격 설명회 자료



목 차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
I. 과정평가형 자격의 의미와 배경 ······· 7
Ⅱ. 운영방향 및 업무흐름 10
< 2017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계획 >
I.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단계별) ······ 19
1. 대상종목 선정 19
2. NCS 기반 교육·훈련 편성·운영기준 21
3.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22
4. 교육·훈련과정 모집 23
5.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 24
6. 교육·훈련과정 심사 및 지정 ······ 26
7.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29
8.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32
9. 시행계획 공고 32
10. 외부평가 문제출제 34
11. 외부평가
12. 합격결정 기준 및 자격증 발급 37
Ⅱ.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현황 39
< 참고자료 >
-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 예시 4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1. 과정평가형 자격의 의미와 배경

Ⅱ. 운영방향 및 업무흐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의미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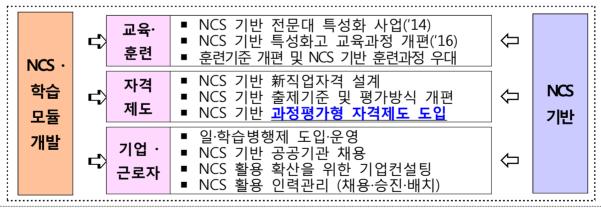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Ι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NCS 기반 능력중심사회 구현(국정과제) 】

- · 능력중심사회는 ①산업현장의 기술.숙련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NCS)하면 ②이 기준에 맞게 현장형 인력을 양성(교육.훈련) 및 정확히 평가(자격)하고
- · 기업은 스펙과 학벌이 아니라 ④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 승진시키고 ⑤근로자 스스로 꾸준한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사회



□ 도입 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되어 '일(산업 현장) 따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문제점* 제기

- *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 18.3개월, 재교육 비용 총 5,959만원 ('13년, 신입사원 교육·훈련 및 수습사원 인력관리 현황조사', 경총)
- * 청년층 첫 일자리 전공 불일치 비율: 4년제 대학 80.7%, 전문대 78.1%, 전문 계고 68.1% ('13년, '청년층의 고용 및 첫 일자리 실태와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대졸자)의 자격취득 소요기간: 평균 9,6개월, 소요 비용 평균 65.7만원 ('09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재직자 설문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을 추진

2. 목적(기대효과)

- 1) 직업교육・훈련 정상화
-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과 자격에서 평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해야 하지만,
 - 그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 이는 학교공부와 자격취득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학생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고, 학교수업의 정상적 운영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 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두 제도 모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 훈련과정 개편

-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에 대한 산업계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 영국, 호주 등 서구 국가의 경우*를 보면 자격을 매개로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3) 자격검정 방법 다양화 및 내실화

- 현행 검정형 자격에 있어 시험만으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 산업현장에서는 암기위주의 시험을 통한 자격취득으로 인해 막상 자격을 취득해도 현장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 제기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훈련생과 교수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기법을 다양화·내실화함으로써
 - '시험을 잘 보는 인재'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잘 하는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제도로 추진
- ⇒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일-교육·훈련-자격'상호간 중복되는 요인을 최소화
 -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 '현장에서 요구 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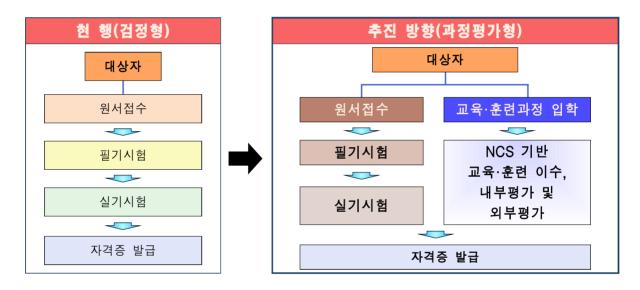
운영방향 및 업무흐름

□ 운영방향

 \pr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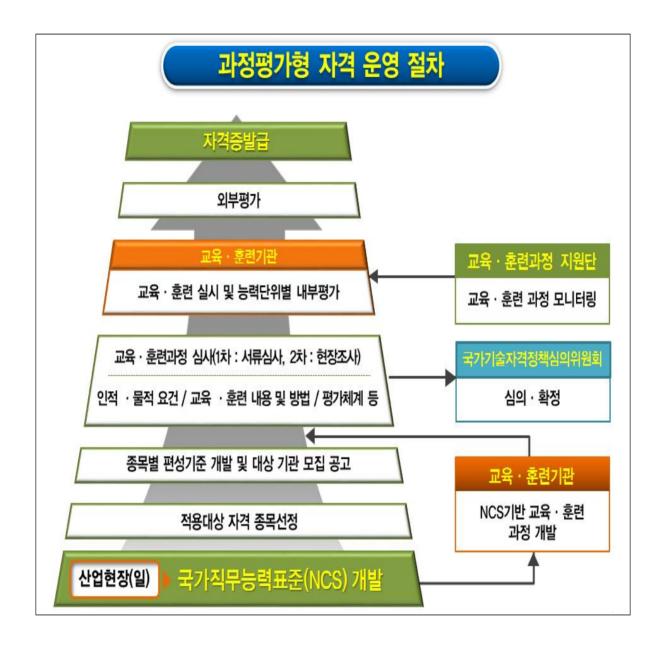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을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병행 운영
 -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은 '14년 이후 일부 종목을 시작으로 시행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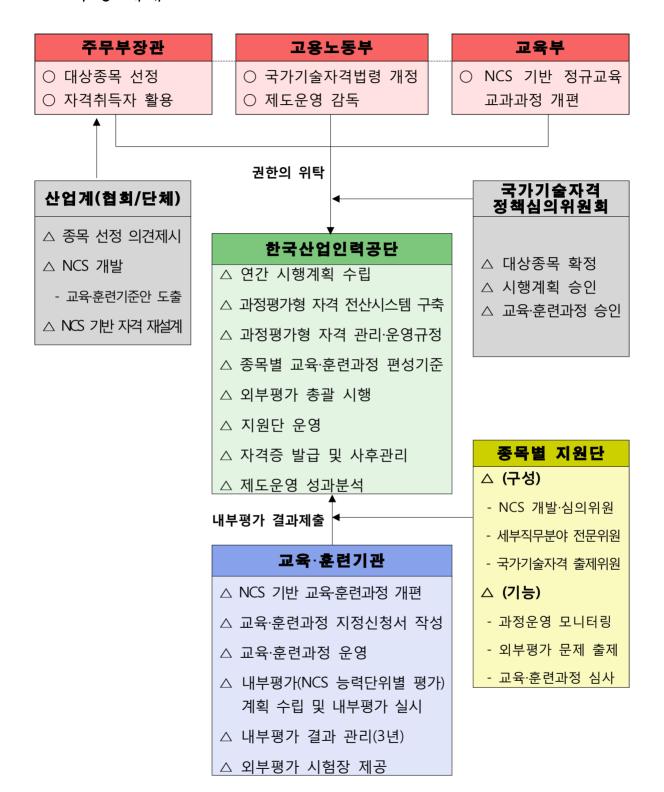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운영
 - 해당 분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 하고, 능력단위별 평가 추진
 - 교육·훈련 기간중 상시적 평가체계를 통한 자발적 교육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가방식 개발·적용하여 검정의 질 제고
 - 운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 〉



□ 과정평가형 자격 업무수행 체계

○ 수행 체계



○ 업무 흐름도

주요절차	세 부 내 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5월말까지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② 자격종목별 교육· 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훈련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③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산업현장교수단, 출제위원 등)	인력공단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 노동부
⑤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편	◈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개편	교육· 훈련기관
⑥ 교육훈련기관(괴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⑦ 외부평가 문제 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⑧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전체 내부평가 참여	교육· 훈련기관
⑨ 교육·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지정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총 2회의 외부평가▷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①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 매년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자격종목의 확대시행 여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운영방안을 시행 계획 수립시 반영(고용노동부)

□ 과정평가형과 기존(검정형) 국가기술자격 비교

검정형	과정평가형				
	종목 선정	차년도 시행종목 선정 (의견수렴, 주무부처 추천)	국가기술자격정 책심 의 회		
	▼				
	편성기준	NCS기반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	주무부장 관 (인력공단)		
	▼				
	과정 선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국기기술자격정 책심 의 회 (인력공단)		
별도절차 없음	▼				
결도결사 하급	교육·훈련과정 개편	NCS 능력단위 적용	교육· 훈련기관		
	▼				
	과정 운영	NCS기반 교육훈련 실시 (원서접수, 모니터링 실시)	교육· 훈련기관 (인력공단)		
	▼				
	내부평가 실시	NCS 능력단위별 실시 (모니터링 실시)	교육· 훈련기관 (인력공단)		
	▼				
외부평가 실시 (필.실기 각 60점)	외부평가 실시	교육기관 현장에서 실시 결정 : 내부평가 + 외부평가 (80점 이상)	인력공단		
▼	▼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교육기간, 능력단위 기재	인력공단		

구 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근거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대 상	등급별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내부평가 : 능력단위별 75% 이상 출석한 자 외부평가 : 내부평가 합격자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충족한 자 -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경우 응시자격 증빙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과 정의 교육·훈련 과정 이수자 -응시자격 증빙 불필요
시험면제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면제 없음
원서접수	해당종목의 필기·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교육·훈련 과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방법	필기시험 : 4지 택일 실기시험 : 필답형, 작업형	내부평가 : 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 : 1차·2차
평가범위	종목별 출제기준 내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능력단위 내
재 평 가	없 음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결과 40%미 만자에 한해 1회 재평가
과정운영 확인	불 필 요	단위과정별 분기 1회 실시
합격기준	필기 :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의 비율로 합산,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자격 종목, 합격일 등 취득 사항만 기재 발급	교육·훈련 기관명, 기간, 이수시간, 능력단위 등 기재 발급

2017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방안

-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계획(단계별)
- Ⅱ.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현황

① 대상종목 선정

○ (선정 기준) 현재 검정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및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2 제2항

-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 1.「자격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 2.「산업발전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신산업분야
- 3.「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뿌리산업 분야
- 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관련 분야
- 5. 기타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이에 따라 '17년 시행할 과정평가형 자격의 선정과 관련하여, ①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의 숙련이 요구되고, ② NCS가 개발된 분야로서, ③ 응시자가 다수인 종목이 많은 산업기사, 기능사 종목에서 우선 선정(31종목)
 - ※ 기사 2종목 선정: '17년 시범실시 예정
- (선정 절차) 주무부장관은 관련협회 및 단체, 주무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 대상종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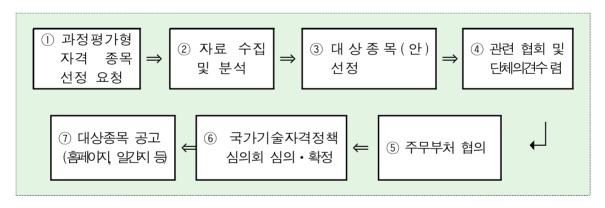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2 제1항

△ 주무부장관은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7년 시행 적용 대상종목(안) >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대상 종목(61개)						
'15년(15종목)~		'16년(15종목)~		'17년(31종목)~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사	기능사	
(7종목)	(8종목)	(3종목)	(11종목)	(2종목)	(19종목)	
①기계설계	① 컴퓨터응용밀링	① 용접	① 미용사(일반)	① 기계설계	① 자동차정비	
②치공구설계	② 컴퓨터응용선반	② 생산자동화	② 이용사	② 메카트로닉스	② 자동차보수도장 ③ 항공기체정비	
③정밀측정	③ 연삭	③ 귀금속가공	③ 화학분석	산업기사	④ 전산응용토목제도	
④기계가공조립	④ 정밀측정		④ 용접	(9종목)	⑤ 콘크리트 ⑥ 측량	
⑤컴퓨터응용가공	⑤ 기계가공조립		⑤ 특수용접	① 공조냉동기계 ② 실내건축	⑦ 조경 ⑧ 공조냉동기계	
⑥사출금형	⑥ 전산 응용 기계제도		⑥ 전자기기	③ 시각디자인	⑨ 웹디자인	
⑦프레스금형	⑦ 공유압	서비스(1종목)	⑦ 전자캐드	④ 컬러리스트	⑩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⑪ 열처리	
	⑧ 금형	① 컨벤션기획사2급	⑧ 생산자동화	③ 임취무	① 전산응용건축제도 ③ 제과 ④ 제빵	
			⑨ 귀금속가공			
			⑩ 천장크레인운전	⑧ 농업기계	15 한식조리	
			⑪ 타워크레인운전	9 정보처리 서비스(1종목)	│ ⑯ 양식조리 │ ⑰ 조주	
				①텔레마케팅관리사	(명) 축산 (명) 전자계산기	

○ (추진 절차)



②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편성기준)

- (목적) 자격종목별로 NCS 기반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생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모니터링의 기준, 종목별 평가 실시기준 등으로 활용됨
- (주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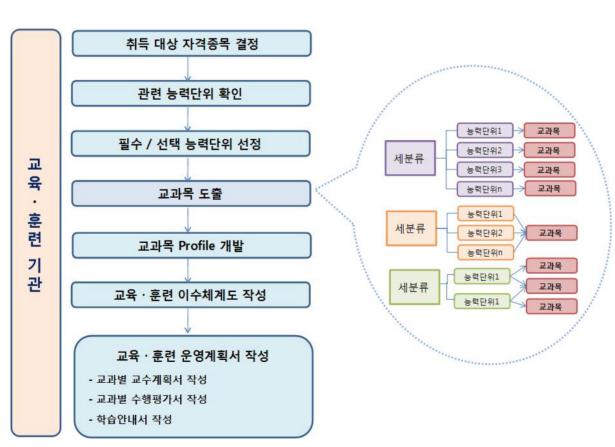
<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항목 >

- ① 교육·훈련과정명
- ② 교육·훈련과정 목표
- ③ 교육·훈련시간
- ④ 교원 요건
- ⑤ 교육·훈련과정 이수체계도

- ⑥ 교육·훈련과정 내용
- 직업기초능력 내용 및 시간
- 필수/선택 능력단위
- 능력단위별 최소 교육·훈련시간
- ⑦ 교육·훈련생 평가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제시
- ⑧ 시설·장비 기준
- (작성방법 및 절차) 매년 대상 종목이 선정된 후, 종목별 교육· 훈련 편성기준 마련
 - 편성기준에 대해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공고되며, 확정된 교육·훈련 편성기준은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
 - § 세부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_자료실_과정평가형 자격 참조

③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

- (대상기관) NCS기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희망하는 전 기관
 - 전문대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기관 등에서 NCS를 적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거나, 개편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
- (편성방법) NCS기반 교육·훈련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 개편



〈교육·훈련과정 편성 흐름도 >

○ (과정편성 지원)

- 교과과정 개편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 등 컨설팅 지원

④ 교육·훈련과정 모집

○ (대상기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2항에 의거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희망하는 전 기관

< 대상기관(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2항) >

-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직능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④ 직능법에 따라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시설 또는 기관
- 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모집과정 수) 총 250개 과정 내외

- "신청대상 자격종목"에서 제시된 61종목 중 교육·훈련과정 신청서를 심사하여 총 250과정 내외 선정
- ※ '17년도에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교육· 훈련기관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직업훈련기관은 예산 등 고려하여 과정평가형자격 과정 선정 예정, 1차 서류심사 이전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단에서 과정심사 (단, 신청 마감일 기준(16.09.12)으로 인증등급 미보유 및 인증 유예 등급기관은 신청이 제한됨)
- ※ 신청대상 종목 및 교육·훈련과정 수, 교육·훈련기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5]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 (목적) 과정평가형 자격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과정 지정평가, 교육·훈련과정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을 위해 종목별로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구성・운영(이하 "지원단"이라 함)

○ (주요 업무)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신청기관 심사(서류심사, 현장조사)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모니터링(분기별 1회 이상)
- 외부평가 문제출제, 시행 및 채점
- 학과별 교육·훈련과정 개편 관련 컨설팅 지원 및 과정평가형 자격 개편 관련 자문 등
- (구성) NCS, 국가기술자격 등 각종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지원단 구성

◇ NCS 개발 전문가
 ◇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
 전문가 풀
 ◇ 국가자격 시험위원
 ◇ 산업현장 교수단
 ◇ 기술사·기능장 취득자

- 지원단을 구성하여 과정 지정심사, 외부평가 출제, 과정 모니터링, 외부평가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활용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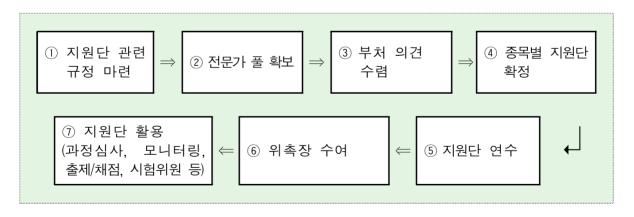
- 대상기관(과정) 지정심사 : 현장전문가, 자격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등으로 과정지정 지원 실시(10명 내외)
 - * 10명: 현장전문가 6명, 교육·훈련전문가 3명, 자격전문가 1명

-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및 외부평가 : 지역별·종목별 현장 및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외부평가 문제출제 및 시험위원(감독 및 채점) 등으로 활용
 - * 모니터링 및 외부평가(감독)시 과정별 각 2명이상(현장 및 교육· 훈련전문가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평가(출제)는 종목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출제
- (운영규정) 지원단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과정 평가형 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 종목별 지원단 관련 주요 규정 >

- ◇ 지원단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또는 설명회 개최(제도의 취지 및 수행 절차 등)
- ◇ 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3년, 연임 가능)
- ◇ 상피제 운영(공정성 논란 제거)
- ◇ 지원단의 간사는 인력공단에서 수행(행정업무 지원)

○ (추진 절차)



⑥ 교육·훈련과정 심사 및 지정

○ (목적)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과정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지정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사·조사 등 실시

< 교육 훈련과정 지정평가 운영방향 >

- ◈ 지정평가 기간을 사전 공고하여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운영
- ◈ 서류심사 중 필수기준 미충족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은 보완기간 부여 후 재평가 실시
- ◆ 서류심사에서 적격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이 현장평가에서 부적격 기관으로 평가된 경우, 지정 제외
- (방법) 지원단을 활용하여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을 평가 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으로 지정
 - *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양식: [서식 1] 참조
 -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교육·훈련과정 심사
 - 1) 서류심사 : 심사 항목(필수 및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수기준을 충족한 과정을 대상으로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 2) 현장조사 : 서류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 현장에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실시
 - * 제출된 신청서 내용 및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서류심사 평가점수에 대한 조정 가능

○ **(심사기준)** 필수기준(3개 항목)과 세부기준(6영역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마련

△ 필수기준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훈련	○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반영도		
과정 반영여부	○ 에당 교육·훈련파당에 녹기역구등학교는 현당도		
2.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 해당 기관에서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적정 시설 및 기자		
확보여부	재를 확보 여부		
3. 교육·훈련생 평가계획 수립여부	○ 별도로 공고된 교육·훈련생 평가기준(최소기준) 충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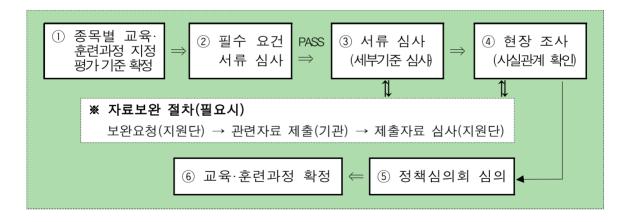
△ 세부기준(필수기준 통과시)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1. 교육·훈련목표	○ 교육·훈련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의 충실성		
2. 과정편성 운영	○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학습 자료의 적절성		
	○ 시설 및 기자재 추가 확보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생 평가 계획의 충실성		
3. 교육·훈련생 평가	○ 교육·훈련생 평가 방법의 적절성		
	○ 교육·훈련생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		
	○ 교육·훈련생 학습 지원 계획의 충실성		
 4. 학습지원 및 성과관리	○ 교육·훈련생 학습 저조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4. 익급시원 및 정의합니 	○ 교육·훈련생 진로지도 계획의 적절성		
	○ 학습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충실성		
도 사이를 된다.	○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5. 산업체 참여	○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참여도		
	○ 교육·훈련과정 대비 교원 확보 및 계획		
6. 교원역량	○ 교육·훈련과정 관련 교원의 전문성		
	○ 교원연수 계획의 적절성		

○ (보완) 서류 및 현장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관련서류 보완시 적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지원단에서 관련 사항 보완요청 가능

< 심사결과 보완 관련 업무절차 >

- ① 지원단에서 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료보완 요청 (7일 이내)
- ②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내용을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단 간사에게 제출
- ③ 종목별 간사는 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해당 평가위원에게 송부(필요시 검토회의 개최)
- ④ 지원단에서는 보완자료를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
- (과정 지정) 종목별 지원단의 교육·훈련과정의 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며, 이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과정 지정 여부를 확정
- (추진 절차)



② 교육·훈련실시 및 내부평가

1.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교과목 구성, 교육·훈련시기, 내부평가 시기 등은 교육·훈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단, 신청서에 반영되어야 함)

2. 내부평가

- (계획 수립)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평 가범위 및 평가내용을 토대로 종목별 내부평가 계획 수립
 - 해당 교육·훈련과정 전 기간 동안 능력단위별 내부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 계획* 수립
 - * 평가내용, 방법, 시간, 채점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능력단위별(기관 특성상 교과목 단위로 구성 가능) 내부평가 계획수립
- (평가 범위) 교육·훈련과정에서 선택한 모든 필수/선택 능력단위

< 주요 내부평가 방법 >

- ◇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단위 요소별 평가도 가능
- ◇ 종목별 편성기준의 "내부평가 방법"에서 제시된 평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자체 평가
- ◇ 기능중심 교육·훈련 내용은 실습 위주로 평가 실시
- ◇ 이론중심 교육·훈련 내용은 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 **(출제)** 산업 현장의 직무와 관련된 실기시험(작업형, 포트폴리오 등)을 중심으로 평가(지필평가 최소화)
- (평가시기)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 * 교과목 형태로 능력단위를 혼합하여 교육·훈련 진행시 평가는 교과목 단위로 실시하여도 반드시 능력단위별 산출
- (평가시간) 문제 수 및 난이도, 변별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시험문제) 내부평가의 시험문제는 자체적으로 출제하되,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제시된 종목별 문제원형을 참고하여 출제
 - * 종목별 문제원형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 자료실 과정평가형 자격에 등재
- (평가시행) 교육·훈련기관 자율적으로 내부 평가위원 위촉·시행
 - 평가위원은 교육·훈련생별 평가결과를 자체 채점표에 기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훈련생 대상 피드백(평가결과, 미흡 사항 등) 실시
- (평가결과) 능력단위별 평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훈련기관 (과정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LMS시스템에 입력
 - 능력단위 요소별로 평가하더라도 능력단위별로 점수 산출
- (평가결과 관리) 내부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관리
- ◈ 과정관리시스템(LMS)에 전산 등록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 입력 (LMS-내부평가-내부평가결과관리)
 - 수험자 명단, 득점현황, 특이사항 등 입력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시험문제, 채점기준, 개인별 채점표 첨부 필수
 - * 평가결과에 대한 보관이 어려운 경우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관리

3. 이수자 결정

- (이수기준) 교육·훈련생은 ①모든 교육·훈련과정(능력단위)을 수료하여야 하며 ②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이 충족되어야 함
- (이수기준 미충족자 처리)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훈련생은 '이수 기준 미충족자'처리
 - * 이수기준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마련한 별도 프로그램 수료 후 1회에 한해 재평가 기회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 기 제출된 운영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8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 (목적) 교육·훈련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을 하여, 과정에 대한 질 관리
 - * 과정지정 평가 시 제출한 계획에 의거 이행여부 확인
-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한 지정 교육·훈련과정으로 공고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 종료일(졸업식, 수료식 등)까지 모니터링 실시
- (내용) 필수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충족 여부, 내부평가의 적정성, 출석 관리 상황 및 시설 장비의 보유 및 활용 상황 등에 대한 확인
- (실시 주기)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 필요시 수시 실시
- (방법) 종목별 지원단에서 서류 또는 현장조사 등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과정에서 위반사항 확인 시 주무부장관에게 통보
 - 주무부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 처분 ※ 처분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5

9 시행계획 공고

○ (시기) 다음 연도 과정평가형 자격 와부평가시행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공고 ○ (내용) 시행계획에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수와 평가의 난이도(수준), 종목별 과정명(종목명칭)과 평가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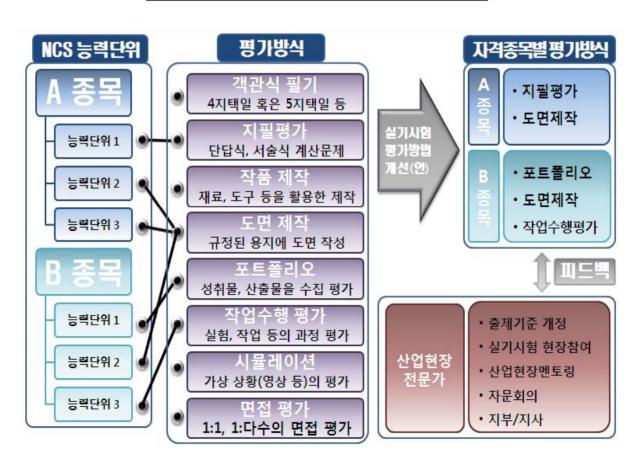
< 시행계획의 내용 >

-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3
 - △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수
 - △ 평가의 난이도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3
 - △ 종목별 교육·훈련 과정명
 - △ 종목별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
 - △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방법) 적용 대상 종목 선정 후, 시행계획에 대한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10 외부평가 문제출제

- (개요) 교육·훈련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종목별 NCS 능력단위 중 필수능력단위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평가 문제출제
 - 종목별 지원단 중에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출제
- **(평가문항)**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 으로 출제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평가, 면접,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능력단위 평가에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문항 구성
 - § 【참고자료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방법 및 외부평가 문제(예시)

〈 종목별 평가방식 도출방안(예시) >



🗓 외부평가

- (목적) 교육·훈련과정 이수한 사람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의 공신력 제고
- (출제)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지원단에서 필수능력단위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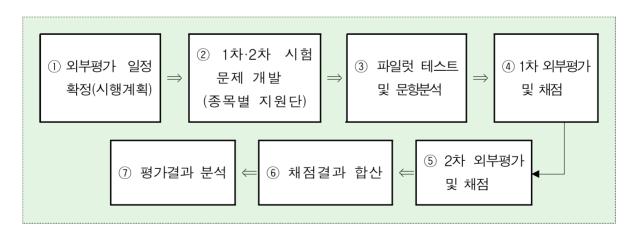
< 외부평가 출제 방안 >

- ◇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규정"에 문제출제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업무수행
- ◇ 평가방법 및 문항 수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문항분석(난이도・변별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
 - ※ 출제된 문제는 사전에 파일럿 테스트 실시 예정
- ◇ 평가방식별 출제 유형
 - 자격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1차, 2차 평가 시 활용

< 평가방식 >		< 출제 유형(예시) >
① 객관식 필기	⇒	4지, 5지, 진위형, 연결형 등
② 지필평가	⇒	단답식, 서술식, 계산문제 등
③ 작품제작	⇒	재료, 도구 등을 활용한 제작
④ 도면제작	⇒	규정된 용지에 도면 작성
⑤ 포트폴리오	⇒	성취물, 산출물을 수집 평가
⑥ 작업 수행평가	⇒	실험, 작업 등의 과정을 평가
⑦ 시뮬레이션	⇒	가상 상황(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
⑧ 면접평가	⇒	1:1 면접, 1:多 면접 등

- (외부평가 방법) 종목별 지원단에서 출제한 문제를 활용하여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종료 후 1차 지필(40%), 2차 실기(60%)
 - 시행 시기는 연 2회 시행
 - 동일 종목은 지원단에서 출제한 같은 시험문제로 동시에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시기 등을 사전에 공고
 - * 세부 평가일정은 매년 7월 중 공고 예정
- **(평가결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합격자 결정
 -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1차례에 한해 추가 외부평가 기회 부여
- (결과분석) 개별 교육·훈련기관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종목별 난이도·변별도 등의 문항분석
 -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문제 구성 및 연구자료 등 으로 활용

○ (추진 절차)



[2] 합격결정 기준 및 자격증 발급

○ (합격결정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

【 내부평가 】

- ◇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 능력단위별 출석률 7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사람은 '미이수' 처리
 - *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회의 내부평가 기회 부여

【 외부평가 】

- ◇ 외부평가는 모든 능력단위 전체 교육·훈련 종료 후 평가
- ◇ 외부평가 점수를 1차(40%), 2차(60%) 평가 후 외부평가 점수로 결정
 -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추가 외부평가 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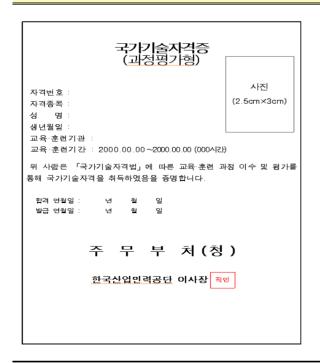
〈 평가결과 처리 절차 〉

- ① 교육·훈련기관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회차별 내부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단으로 제출(LMS에 입력)하여야 함
- ② 공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성적관리
- ③ 공단은 내부평가 결과와 외부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외부평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 발표
 -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표일부터 7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청서 제출

- (자격증 발급)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한 사람이 발급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
 - ⇒ 현행 자격증과 달리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교육 훈련시간 및 NCS 능력단위 내용 등을 병기하여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서식



교육·훈련 내용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비고
예시: 050203040407	예시: 금형수정(사출)	필수/선택

[※] 능력단위코드는 국가정무능력표준사이트 (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d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현황

○ (시행종목) '15년도 산업기사·기능사 등급 총 15개 종목 ⇒ '16년 이·미용, 용접, 귀금속분야 등 15개 종목 추가(누적 30개 종목)

<'15년 시행종목>

산업기사	① 컴퓨터응용가공, ② 기계가공조립, ③ 기계설계, ④ 치공구설계,
(7종목)	⑤ 정밀측정, ⑥ 사출금형, ⑦ 프레스금형
기능사	① 컴퓨터응용선반, ② 컴퓨터응용밀링, ③ 기계가공조립, ④ 연삭,
(8종목)	⑤ 공유압, ⑥ 전산응용기계제도, ⑦ 정밀측정, ⑧ 금형

<'16년 추가 시행종목>

산업기사 (3종목)	① 용접산업기사, ② 생산자동화산업기사, ③ 귀금속가공산업기사
기능사 (11종목)	① 미용사(일반), ② 이용사, ③ 화학분석기능사, ④ 용접기능사, ⑤ 특수 용접기능사, ⑥ 전자기기기능사, ⑦ 전자캐드기능사, ⑧ 생산자동화기능사, ⑨ 귀금속가공기능사, ⑩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⑪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서비스 (1종목)	① 컨벤션기획사2급

 ○ (운영현황) '15년도 52개 과정 지정·운영, 174명 대상 외부평가 실시하여 합격자 51명* 배출 ⇒ '16년 129개 과정 지정·운영

* '15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51명(산업기사 10명, 기능사 41명), 합격률 29.3%

<'15~'16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기관 분포>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대	폴리텍	4년제대	훈련기관	기업	총계
<u>`15년</u>	(특) 2개 기관 (5과정) (마) 1개 기관 (2과정)	8개 기관 (9과정)	10개 기관 (13과정)	_	19개 기관 (22과정)	1개 기관 (1과정)	41개 기관 (52과정)
<u>`16년</u>	(특) 3개 기관 (7과정)	11개 기관 (15과정)	19개 기관 (38과정)	3개 기관 (6과정)	47개 기관 (62과정)	1개 기관 (1과정)	84개 기관 (129과정)

* 교육기관은 전체 125개 기관 중 25개 기관(20%)

붙임1 '16년 제1회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 현황

등급	종	합격	
계	11	종목	221
	소계	4종목	61
	치공구설계산업기	사	14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신	<u>·</u> 업기사	14
	기계설계산업기시	ŀ	31
	용접산업기사	2	
	소계	6종목	146
	기계가공조립기능사		17
	컴퓨터응용선반기	29	
기능사	미용사(일반)	6	
	귀금속가공기능시	16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12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66
서비스	컨벤션기획사 2급	1	14

< 참고자료 > -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 예시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종목명: 한식조리기능사)

2016. 8.



1. 교육·훈련 과정명

○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2. 교육·훈련 과정 목표

○ 한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기호에 충족하는 한식조리법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 및 조리함에 있어 식품위생과 안전을 준수하고, 조리기구·시설을 관리하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3. 교육·훈련 교원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 1. 『고등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학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 2.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3. 『초·중등교육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 4.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 『숙련기술장려법』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산업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 10.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4. 교육·훈련시간

□ 기준시간 : 총 600시간 이상

구 분	능력단위 총 시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비고
총 계	750시간	600시간	
직업기초능력	30시간	30시간 이상	
필수능력단위	360시간	360시간 이상	
선택능력단위	360시간	210시간 이상	

가. 직업기초능력 : 30시간 이상

교과목	하위영역	교육·훈련
,	11101	시간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사력, 기초외국어 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30시간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나. 필수능력단위 : 총 360시간 이상

연 번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세분류명)	최소 교육·훈련 시간
1	1301010104_16v3	한식국·탕조리(한식조리)	60시간
2	1301010115_16v3	한식 위생관리조리실무(한식조리)	30시간
3	1301010116_16v3	한식 안전관리조리실무(한식조리)	30시간
4	1301010120_16v3	한식 기초조리실무(한식조리)	45시간
5	1301010121_16v3	한식 밥조리(한식조리)	45시간
6	1301010123_16v3	한식 찌개조리(한식조리)	60시간
7	1301010127_16v3	한식전·적조리(한식조리)	45시간
8	1301010130_16v3	한식 숙채조리(한식조리)	45시간

다. 선택능력단위 : 총360시간 중 210시간 이상

연 번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세분류명)	최소 교육·훈련 시간
1	1301010111_16v3	김치조리(한식조리)	60시간
2	1301010112_16v3	음청류조리(한식조리)	45시간
3	1301010118_16v3	한식 구매관리조리실무(한식조리)	30시간
4	1301010119_16v3	한식 재료관리조리실무(한식조리)	30시간
5	1301010122_16v3	한식 죽조리(한식조리)	45시간
6	1301010129_16v3	한식생채·회조리(한식조리)	45시간
7	1301020101_16v2	식음료영업준비(식음료접객)	30시간
8	1301020106_16v2	음식서비스(식음료접객)	45시간
9	1301020107_14v2	식음료영업장마감(식음료접객)	30시간

5. 교육·훈련 이수체계도

NCS 수준	능력단	단위명		
8수준				
7수준 6수준				
5수준				
4수준	김치조리 (60H)			
3수준	음청류조리 (45H) 한식생채·회조리 (45H) 한식 구매관리조리실무 (30H)	식음료 영업장마감 (30H) 음식서비스 (45H)		
2수준	한식 국·탕조리 (60H) 한식 위생관리조리실무 (30H) 한식 안전관리조리실무 (30H) 한식 기초조리실무 (30H) 한식 밥조리 (45H) 한식 찌개조리 (60H) 한식 전·적조리 (45H) 한식 숙채조리 (45H) 한식 국채조리 (45H)	식음료 영업준비 (30H)		
_	직업기	직업기초능력		
수준 세분류	한식조리	식음료접객		

※ 음영부분은 "필수능력단위"를 표시

6. 시설·장비 기준

가. 필수능력단위 관련 시설기준 (20명 기준)

훈련인원 시설명	기준면적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시설 활용구분
강의실	45m ²	1명당 1.5m² 추가	공용
실습실	70m ²	1명당 1.5m² 추가	공용
재료준비실	10m ²	1명당 1.5m² 추가	공용

나. 필수능력단위 관련 장비기준

장 비 명	규 격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	2구 이상	대	공용	1명
냉동냉장고	업소용(4door이상)	대	공용	실당 1대
개수대	600*400mm	대	공용	1명
조리대	900*700mm	대	공용	1명
믹서기	소형 이상	대	공용	5명
빔프로젝트 또는 LCD	-	대	공용	실당 1대
컴퓨터	인터넷 가능	대	공용	실당 1대
방송설비(마이크,증폭스피커)	-	대	공용	실당 1대

[※] 장비는 주 장비만 제시한 것으로 그 외의 장비와 공구는 별도로 확보

다. 선택능력단위 관련 시설·장비기준

○ 세분류 "식음료접객" 관련 장비기준

장 비 명	규 격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테이블 및 의자	-	SET	공용	실당 1SET
포스(POS)	-	대	공용	실당 1대
전자계산기	-	대	공용	실당 1대
카드리더기	-	대	공용	실당 1대

※ 그 외의 공구는 별도로 확보

○ 나머지 능력단위 관련 시설·장비 : 해당사항 없음

7. 내부평가 관련 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과정에서 선택한 모든 필수능력단위 및 선택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내부평가 결과는 능력단위별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수의 능력단위를 묶어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평가결과는 능력단위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내부평가 범위 및 방법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 (세분류명)	필수/선택 능력단위	주요 평가내용 (능력단위 요소)	내부평가 방법
13010101 04_16v3	한식 국·탕조리 (한식조리)	필수	 국·탕 재료 준비하기 국·탕 조리하기 국·탕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15_16v3	한국 위생관리조리실무 (한식조리)	필수	개인위생 관리하기식품위생 관리하기주방위생 관리하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16_16v3	한국 안전관리조리실무 (한식조리)	필수	개인안전관리하기장비·도구 안전작업하기작업환경 안전관리하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20_16v3	한식 기초조리실무 (한식조리)	필수	기본 칼 기술 습득하기기본기능 습득하기기본 조리방법 습득하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21_16v3	한식 밥조리 (한식조리)	필수	밥 재료 준비하기밥 조리하기밥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23_16v3	한식 찌개조리 (한식조리)	필수	찌개 재료준비하기찌개 조리하기찌개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27_16v3	한식 전·적조리 (한식조리)	필수	 전·적 재료준비하기 전·적 조리하기 전·적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30_16v3	한식 숙채조리	필수	숙채 재료준비하기 숙채 조리하기 숙채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명 (세분류명)	필수/선택 능력단위	주요 평가내용 (능력단위 요소)	내부평가 방법
13010101 11_16v3	김치 조리 (한식조리)	선택	 김치 재료준비하기 김치 양념배합하기 김치 조리하기 김치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12_16v3	음청류조리 (한식조리)	선택	음청류 재료준비하기음청류 조리하기음청류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18_16v3	한식 구매관리 조리실무 (한식조리)	선택	시장조사하기구매 관리하기검수 관리하기	평가자질문 문제해결시나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13010101 19_16v3	한식 재료관리 조리실무 (한식조리)	선택	저장 관리하기재고 관리하기선입선출하기	문제해결시나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작업장평가
13010101 22_16v3	한식 죽조리	선택	 죽 재료 준비하기 죽 조리하기 죽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101 29_16v3	한식 생채·회조리 (한식조리)	선택	생채·회 재료 준비하기 생채·회 조리하기 생채·회 담기	포트폴리오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13010201 01_16v2	식음료 영업준비 (식음료접객)	선택	테이블 세팅하기스테이션 준비하기음료 재료 준비하기영업장 점검하기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역할연기 작업장평가
13010201 06_16v2	음식서비스 (식음료접객)	선택	음식 제공하기테이블 상황 점검하기계산하기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역할연기 작업장평가
13010201 07_14v2	식음료영업장마감 (식음료접객)	선택	영업장 정리하기일일 재고 점검하기영업장 마감하기	서술형시험 평가자체크리스트 구두발표 역할연기 작업장평가

[※] 선택능력단위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능력단위만 내부평가를 실시하되, 제시된 내부평가 방법 중 교육·훈련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방법 1가지 이상 선택 적용

내부평가 방법

구 분	평 가 유 형	설 명 자 료
A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В	문제해결 시나리오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С	서술형시험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D	논술형시험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E	사례연구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 하여 평가
F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 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G	평가자 체크리스트	많은 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과정이나 작업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Н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
I	일지/저널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작업과정이나 학습결과를 기록하여 평가
J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문제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의 인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보도록 평가
K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L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관련 NCS분류/계열별 직업기초능력 선호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고, 직업기초능력의 현장성과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시된 NCS 소분류별 선호도를 참고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관련 NCS분류/계열별 직업기초능력 영역 선호도

중분류	식음료조리·서비스					
소분류	음식	조리	식음료	로서비스	전	체
구분	가중치	АНР	가중치	АНР	가중치	АНР
의사소통	중	상	상	상	상	상
수리	하	중	하	하	하	중
문제해결	상	상	상	상	상	상
자기개발	상	중	하	중	중	중
자원관리	하	중	중	중	하	중
대인관계	중	상	중	상	중	상
정보	중	중	중	하	중	중
기술	상	하	상	중	상	하
조직이해	하	하	하	중	하	하
직업윤리	중	하	중	중	중	하

< 끝 >

Ⅱ.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서 작성 매뉴얼



(자격<mark>종목명</mark>)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2000.0.0.

신청기관명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		주소	
기관	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성명	H.P)
적용 7	다격 종목명		
교육·혼	훈련 과정명		
교육·훈련생 수			
교육·훈련 기간		20○○. ○월 ○일 ~	20○○. ○월 ○일(○개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후 상기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관련 법령과 과정평가형 자격 추진 정책을 준수하고,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교육·훈련기관장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 직인은 1부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복사본으로 제출 가능

◈ 필수기준 ◈

□ 필수기준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훈련과정 반영	○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NCS 능력 단위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
2.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보	○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3. 교육·훈련생 평가계획 수립	○ 능력단위별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 하였는가?

의 필수기준 3가지 평가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처리

< 필수기준 >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교육·훈련과정 반영

구 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 시간	실제 반영시간	반영비율	비고
계	000시간 이상	000시간	0%	
직업기초능력	30시간 이상	○○시간	○%	
필수능력단위	ㅇㅇㅇ시간 이상	ㅇㅇㅇ시간	0%	
선택능력단위	총 ○○시간 중 ○○시간 이상	000시간	0%	
선택능력단위 (자율편성)	선택능력 ○○시간 중 ○○시간	○○○시간	0%	선택능력단위 이수기준시간 최대50%이내

- 자율 선택 능력단위별 편성 사유
 - (자율 선택능력단위) :
 - (자율 선택능력단위):

작성 지침

- 실제반영시간 :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교육훈련 반영시간 (기준)을 토대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 운영 시 실제 교육훈련에 반영할 시간을 기입
- 반영비율 :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 반영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실제 반영시간의 비율을 기입
 - 방법 : 시제반영시간/반영시간(기준)×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응권한 숫자 기인)
- 자울선택능력단위 편성: 선택능력단위 이수기준시간 중 최대 50% 범위에서 타 NCS 기반자격이나 NCS 능력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가능. 단,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선택능력단위를 편성할 경우 최소 교육훈련시간은 준수
- 자용선택능력단위 편성 사유 : 선택 능력단위 자용 편성 시 편성사유 기재

②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보

○ 시설기준 (교육·훈련생 수 : ○○명)

기준	편성기준			편성기준 보유시설		
시설명	기준인원 (20명)	기준인원 초과시 적용기준	활용 구분	규모	활용 구분	비고
강의실	45 m²	1인당 1.5㎡씩 추가	공용	45 m²	공용	필수
컴퓨터실	45 m²	1인당 1.5㎡씩 추가	공용	60 m²	공용	필수
○○실습실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m^2	1인당 △ m²씩 추가	공용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m^2	공용	필수
○○실습실	$\bigcirc\bigcirc\bigcirc$ m^{2}	1인당 △ m²씩 추가	공용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m ²	공용	선택

작성 지침

-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시설 기준을 토대로 교육· 훈련기관에서 이와 상응하는 보유시설을 기입
-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할 교육·훈련과정 시설기준 작성시 종목별 교육· 훈련과정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비고" 란에는 해당 시설이 필수능력단위 관련 시설이면 "필수", 선택능력 단위 관련 시설이면 "선택"을 기재

○ 장비기준

장비명	편성기준상 기준			실제 보유		
78 PI 78	보유기준	규격	총	실제 보유기준	규격	비고
000	1인당 ○대	00 X 00 이상	○대	1인당 1.3대	00 X 00	필수
000	5인당 1대	△△이상	○대	5인당 1.5대	000	선택

-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장비기준을 토대로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유증인 장비 현황 및 규격을 기재
- 교육·훈련기관에서 윤영할 교육·훈련과정 정비기준 작성시 종목별 교육· 훈련과정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장비명 :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필수/선택 능력단위와 관련된 장비명을 모두 기재
 - 편성기준 상 장비기준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장비 기준을 참고 하여 기재
 - 실제 보유장비 수(총) :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유중인 총 장비수 기재
 - 실제 보유장비 수(실제보유기준) : 편성기준상 장비기준 대비 실제 보유한 장비의 기준을 제시
 - ※ 예를들어, 20명을 교육·훈련시, 편성기준상 장비기준이 5인당 1대이고, 실제 보유 대수가 5대라면 실제 보유기준은 5(보유장비수) / 4(편성기준상 장비수) = 1.25
- "비고" 란에는 해당 장비가 필수능력단위 관련 장비이면 "필수", 선택능력 단위 관련 장비이면 "선택"을 기재

③ 교육·훈련과정 내부평가 계획 수립

구분	능력단위명	평가시기	평가방법	비고
계	총 🔾 💆			
출석	O 능력단위별 출 석	매 수업시	출석부	<i>7</i> 5% 이상
	○ 능력단위명	'○○년○월	포트폴리오	필수
	○ 능력단위명	'○○년○월	평가자체크리스트	선택
내부	○ 능력단위명	'○○년○월	포트폴리오	선택
 평가	•••	•	•	•
	•••	•	•	
	○ 능력단위명	(00년0월	서술형평가	필수

- (기본방향) 필수능력단위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선택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내부평가 시기 및 평가방법 작성
- 출석 :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필수 및 선택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실시과정에서 능력단위별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75%이상 출석시 이수
- 평가시기 :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평가시기를 기재
- 평가방법 : 능력단위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내부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부평가 방법 결정
- 비고 : 편성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능력단위가 필수능력단위인지 선택 능력단위인지 기재
 - ※ 모든 내부평가는 인력공단에서 매년 6월말 공고되는 연간 외부평가 일정 이전에 완료되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외부평가 응시 가능

◈ 세부기준 ◈

□ 세부기준

평가영역	세부 평가기준
1.교육 · 훈련목표	1.1 교육·훈련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2.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의 충실성
2.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2.2 교수·학습방법의 적절성
	2.3 시설·장비의 추가 확보계획의 적정성
3.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3.1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계획의 충실성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계획	3.2 교육·훈련생 내부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
	4.1 교육·훈련생 학습지원 계획의 충실성
4. 학습지원 및 성과관리	4.2 학습 저조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4. 약급시권 및 성과관디	4.3 교육훈련생 진로지도 계획의 적절성
	4.4 학습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의 충실성
E 1101-11 7101	5.1 현장 전문가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참여도
5. 산업체 참여	5.2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정도
	6.1 교육·훈련과정 대비 교원 확보 및 계획
6. 교원역량	6.2 교육·훈련과정 관련 교원의 전문성
	6.3 교원 연수계획의 적절성

< 세부기준 >

I. 교육·훈련기관 소개

1-1. 교육훈련기관 소개(학교연혁, 교직원, 학과 및 학생 현황 등을 포함하여 A4 2페이지 이내로 기술)

|--|

0			

작성 지침

• 교육·훈련기관 연혁 : 교육·훈련기관의 역사 등을 건략하게 기술

□ 교직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전체 교원		
신청 교육·훈련과정		
참여교원		

- 교직원 현황
- 교육·훈련기관의 전체교원을 정원과 현원을 구분하여 작성
- 신청한 교육·훈련과정 지도할 교원을 정원과 현원 구분하여 작성

□ 과정별 교육·훈련생 현황

키져면/파노 참키면\		정 원			현 원	
과정명(또는 학과명)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총 계						

- 과정별 교육·훈련생 현황 : 신청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기관의 과정별(또는 학과별) 정원과 현원을 구분하여 작성
- '학년'란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Ⅱ. 교육·훈련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2-1. 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목표 (A4용지 1매 이내로 서술)

○ 휴먼명조(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전문가로서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서 지향하는 것을 폭넓게 기술하는 것으로 산업계 요구 및 지역실정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 하여 A4 I페이지 이내로 작성
 - 특히,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포함하여 목표로 하는 인재상 등을 기술
- 문장기술 형태는 ~ (해당 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주요 지식·기술) ~ (주요 교육 내용)을 위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로 제시
 -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분야 정의를 참고 하여 작성

Ⅲ.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3-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대상 자격종목명 : ()						
구분	O 학년		0 3	학년			
TE	○학기(월)	○학기(월)	○학기(월)	○ 학기(월)			
교육·훈련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직업	의사소통능력	지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초 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또는			
(OOH)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기술능력	교양교과명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OOH)			
	능력단위명 (○○H)	능력단위명 (○○H)	능력단위명 (○○H)	능력단위명 (OOH)			

- (기본방향) 실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할 교과목명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시기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종목별 편성기준" 참고)
- 대상종목 :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하고자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명 기재
- 직업기초능력 :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교과목 명을 기재
- 능력단위명 :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단위명칭 기재
- 구분 :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교육·훈련시간 : 해당 학기(월)별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총 교육·훈련시간의 합을 기입

3-2. 자격종목의 NCS 능력단위 및 교육내용

○ 능력단위와 교과목명과의 관계

능력단위명 (세분류명)	구분 (필수 <i>/</i> 선택)	기준시간	교과목 명	교육·훈련 시간
밀링가공 도면해독 (밀링가공)	필수	30시간	드며체도	60시간
도면해독 (기계요소설계)	필수	30시간	도면해독	00시선
공구관리 (연삭가공)	자율선택	15시간	연삭공구관리	20시간
휴먼명조(12P)				

○ 능력단위와 교육 연계 중점추진 내용

_

_

- (기본방향)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능력단위가 교과목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작성
- 교과목명 및 교육·훈련시간은 해당 능력단위를 조합하여 조정 가능
 - 능력단위와 교과목간의 관계는 1:1, 多:1, 1:多曼 모두 허용
 - 하나의 능력단위를 쪼개어 교과목으로 구성시 숫자나 문자 등으로 구분 하여 교과목명 구성 가능
 - ※ 60시간짜리 능력단위가 있다면 "교과목Ⅰ", "교과목Ⅱ"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 교과목명은 교육·훈련과정의 특성 및 구성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기재 가능
- 능력단위 관련 기준시간은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간을 기재하고, 교과목 관련 교육·훈련시간은 해당 교과목별 실제 총 교육·훈련 시간을 기재
 - 다수의 능력단위를 조합하여 교과목이 구성된 경우, 교육·훈련시간은 개별 능격단위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간 이상이 반영되도록 배정해야 함

3-3. 직업기초능력 교육내용

○ 직업기초능력 교육·훈련 내용

직업기초능력 명	교육·훈련 교과명	교육·훈련 시기	교육·훈련 시간	비고
정보화능력	정보화 능력	1학년 1학기	15시간	직접
수리능력	공업수학	1학년 2학기	15시간	대체
	•	•	•	
	•	휴먼명조(12P)	•	

작성 지침

- (기본방향)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10가지 직업기초능력 중 해당 교육훈련 과정 윤영과 관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명 기재
- 직업기초능력명 :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안)"에서 제시된 Io개 직업 기초능력 중 해당시간을 선택하여 기재

< 직업기초능력의 10개 영역 >

- ① 의사소통능력 ② 수리능력 ③ 문제해결능력 ④ 자기개발능력 ⑤ 자원관리능력
- ⑥ 대인관계능력 ⑦ 정보능력 ⑧ 기술능력 ⑨ 조직이해능력 ⑩ 직업윤리능력
- 교육·훈련 교과명 : 해당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하는 교양교과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훈련 교과목명 기재
 - 교과목명은 직업기초능력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기존 교과목 중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이를 교육· 훈련하는 과정에서 직업기초능력 자료를 흔합하여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 시기 : 해당 직업기초능력을 교육·훈련하는 시기를 기재
- 비고 : 제시된 직업기초능력을 직접 활용할 경우 "직접"을 기재하고, 보통 교과 등을 활용할 경우 "대체"를 기재

3-4. 교수학습방법 및 학습자료 활용계획

□ 교수학습 방법

교과목명 :	해당 능력단위명 :
○ 교과별 교수학습방법을	기술
○ 휴먼명조(1 2 P)	
교과목명 :	해당 능력단위명 :
0	
0	
교과목명 :	해당 능력단위명 :
0	
0	
	•••••

- (기본방향)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강조되는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 습방법의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예-프로젝트, 문제해결법 등의 교수학습 방법 활용확대 계획)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내롭게 도입 또는 변경될 사항들을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3-2. 자격종목의 NCS 능력단위와 교육내용"에 제시된 능력단위(또는 교과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교과목명 : 능력단위 조합을 통해 도출한 교과명을 기입
 - 해당 능력단위명 : 해당 교과목에 포함되는 능력단위명을 기재(복수의 능력단위을 활용하여 교과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활용된 모든 능력단위명을 기재)
- 자격 종목 실기능력 지도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프레스금형산업기사의 "2D 설계", "2D CAD 실습 I"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작성 예시 참고(다음페이지)

☞ 교수학습 방법 작성 예시

교과목명: 2D설계 해당 능력단위명: 도면해독, 설계도면 작성

- 내용은 가급적 실험·실습을 통하여 지도하되, 원리나 법칙을 이해시켜 창의력을 기르도록 한다.
- CAD프로그램은 학교 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의 기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도면해독'영역에서는 KS, ISO의 제도 통칙, 도면의 종류와 특성, 기하공차 및 가공공차 원리를 지도한다.
- '설계사양과 구성요소 확인하기' 영역에서는 개념설계 단계의 설계사양과 구성 요소를 검토하여, 설계사양에 맞게 구성요소가 선정되어 있는지와 주요 치수가 정확히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도면 작성하기' 영역에서는 산업표준에 규정한 도면 작성법에 의하여 정확 하게 도면화하고 부품 상호간 기구학적 간섭을 확인하여 오류발생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도면 출력하기' 영역에서는 설계 데이터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고 완성 도면을 용도에 맞추어 출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과목명 : 2D CAD 실습 I 해당 능력단위명 :도면해독, 단순형상모델링

- 내용은 가급적 실험·실습을 통하여 지도하되, 원리나 법칙을 이해시켜 창의력을 기르도록 한다.
- CAD프로그램은 학교 설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의 기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2D CAD 도면 준비하기' 영역에서는 2D CAD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수집하며 사용할 CAD 프로그램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정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 '2D CAD 도면 작성하기' 영역에서는 2D CAD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형상을 산업표준을 준수하여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도면 수정 및 편집, 추가적인 정보(영역, 길이, 각도, 공차, 지시 등) 도출 및 생성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 '도면 출력하기' 영역에서는 작성된 2D CAD 파일 관리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 학습자료 활용계획 (A4용지 1매 이내로 서술)

○ 교육·훈련과정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능력단위명 (또는 교과목 명)	자료명	자료형태	개발시기	활용시수	개발주체
	휴먼명조(12P)				

- (기본방향)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별로 교육·훈련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기재
- 자료명 : 교육훈련과정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 명칭 기입
- 자료형태 : 단행본, 유인물, CD, PPT, 동영상 자료 등을 구분하여 교수 학습자료 유형을 기입
- 개발시기 : 각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시기를 기입
- 활용시수 : 해당 교수학습 자료가 활용되는 수업시간, 학기 등의 단위로 제시
- 개발주체: 자체개발, 외부자료 활용 시 개발기관 등을 기재

□ 학습자료 및 교보재 개발계획 (A4용지 1매 이내로 서술)

능력단위명 (또는 교과목 명)	주요내용	자료형태	개발시기
-	휴먼명조(12P)		
○ 휴먼명조(1 2 P)			

- (기본방향) 교육·훈련기관 자혜적으로 추가 개발예정인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학습자로 또는 교보재 내용을 기재
- 향후 개발예정인 학습자료 및 교보재 개발계획 등을 ALL I페이지 이내로 기술

3-5. 시설·장비의 확보 계획의 적정성

□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현행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 현행 교육·훈련과정의 시설 현황

교육·훈련 시설명	편성기준상 시설기준(20명)	사용 예정시설 규격	비고
강의실	45m ²	45m ²	동일
컴퓨터실	60m ²	70m ²	10m² 초과
○○실	$\bigcirc \bigcirc m^2$	$\bigcirc \bigcirc m^2$	
	휴먼명조(12P)		

- (기본방향)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과 관련하여 보 유중인 교육·훈련 시설 현황을 기재
 - 교육·훈련 시설명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설명을 참고하여 기재
 - 편성기준상 시설기준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설 기준을 작성
 - ※ 기준인원(20명) 이상 일 경우에는 실제 시설기준을 작성
 - 예 : 교육훈련생 30명인 경우 강의실 편성기준상 시설기준 작성시 60m² 기재 $45m^2$ (편성기준상 20명 시설기준) + $15m^2$ (1인당 1.5m²씩 추가)
 - 사용 예정 시설 규격 : 실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해 사용예정인 시설의 규격
 - 비고 : 편성기준상 규격과 보유시설의 규격을 비교하여 "동일", "〇〇m² 부족" 등을 기재

○ 현행 교육·훈련과정의 장비 현황

장비명	편성기준상 장비기준	실제	보유장비 수	비고
^∂ H ♂	(20명 기준)	총	실제 보유기준	1111
컴퓨터(CAD/CAM S/W 포함)	1인당 1대	20대	1인당 1대	공용
범용선반	5인당 1대	5대	5인당 1.25대	공용
휴먼명조(12P)				

- (기본방향)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과 관련하여 보 유중인 교육·훈련 장비 현황을 기재
 - 정비명 :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필수/선택 능력단위와 관련된 정비명 모두 기재
 -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장비 이외에 교육·훈련과 관련된 장비는 모두 기재
 - 편성기준 상 정비기준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장비 기준을 참고 하여 기재
 - 실제 보유정비 수(총) :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유중인 총 정비수 기재
 - 실제 보유정비 수(실제보유기준) : 편성기준상 정비기준 대비 실제 보유한 정비의 기준을 제시
 - ※ 예를들어, 20명을 교육·훈련시, 편성기준상 장비기준이 5인당 1대이고, 실제 보유 대수가 5대라면 실제 보유기준은 5(보유장비수) / 4(편성기준상 장비수) = 1.25
 - 비고 : 정비가 "공용"정비인지 "전용"정비인지를 기재

□ 향후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

○ 시설 확충계획

교육시설명	기준인원	면적	확충예정시기	비고
000	00명	$\bigcirc \bigcirc m^2$	'○○년○월	
000	00명	$\bigcirc \bigcirc m^2$		
000	00명	$\bigcirc \bigcirc m^2$		

- ※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장비 확보계획

H O ZLUL IN	현 재	추가	예상	확충예정
보유장비 명	보유수	구매수	설치장소	시기
000	ㅇㅇ 대	0 이 대		'ㅇㅇ년ㅇ월
000	ㅇㅇ 대	00대		
000	ㅇㅇ 대	00대		

※ 구매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기본방향) 현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토대로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확충예정인 시설 및 장비를 구분하여 작성
- 시설의 경우, 확충 시기를 작성하고, 정비의 경우, 현재 보유수와 추가할 정비 수 및 예상 설치장소, 시기를 작성
 - ※ 타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와의 공동 활용계획도 포함하여 작성가능
- 핰충예정시기 : 장비 구매 시기 표시

Ⅳ.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4-1. 교육·훈련생 내부평가 계획 충실성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 평 7 ○	가의 기본방향					
□ 평 7						
□ 평 フ ○	가의 절차					
l — , -						
□ 등	벽단위별 평가방	법 구성				
구분	병단위별 평가방 능력단위명	법 구성 주요평가 내용	강의 학습 방법	평가시기	내부평가 방법	비고
		주요평가		평가시기 '○○년○월		비고 필수
구분	능력단위명	주요평가 내용 - -			방법	
구분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주요평가 내용 - -		'○○년○월	방법서술형평가평가자	필수
구분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주요평가 내용 - -		'○○년○월 '○○년○월	방법서술형평가평가자체크리스트	필수 선택 선택
구분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능력단위명	주요평가 내용 - -		'○○년○월 '○○년○월	방법서술형평가평가자체크리스트	필수 선택

□ 출제 설계(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 배점비중, 문항 수, 평가시간 등)
_
_
□ 평가기준(채점기준표 및 배점)
_
□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_
(휴먼명조, 12P)

- (목적)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서의 평가방법에 따른 교육생 성과 달성여부 평가에 대한 목적 제시
- (기본방향) 필수능력단위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선택능력단위를 포함하여 내부평가 추진방향 등 제시
- '능력단위명'란은 필수능력단위와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선택능력 단위명을 기재
 - ※ "3-2. 자격종목의 NCS 능력단위 및 교육내용"에서 선택된 능력단위를 참조
- 평가시기 :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평가가능 잊자 기재
- 내부평가 방법 :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방법 중 해당 능력단위의 평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한가지 이상 선택하여 기재하되 평가방법 도출
- 능력단위별 평가유형 평가 도출 방법 :평가의 목적(시험 및 검사를 통한 인지적 수준 측정 등) 에 따라 측정 도구 활용방법
- 출제 설계(중요도, 난이도, 활용빈도, 배점비중, 문항 수, 평가시간 등): 능력단위별 중요도 등 검안하여 출제 설계 제시
- 능력단위별(능력단위요소)>출제문항(과제)>평가사항>채점기준(배점기준표)에 의거 내부평가실시 사항 기재
- 비고 : 해당 능력단위가 "필수능력단위"인지 "선택능력단위"인지 기재

< 참고자료 >

내부평가 방법

구 분	평 가 유 형	설 명 자 료
А	포트폴리오	자신이 작성하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모아 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
В	문제해결 시나리오	문제해결 능력의 획득을 두고 평가 대상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
С	서술형시험	주어진 주제나 요구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 게 하여 평가
D	논술형시험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을 언어로 서술하게 하여 평가
E	사례연구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이전의 사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선정하여 그 성공이나 실패요인을 분석 적용 하여 평가
F	평가자 질문	평가 대상자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G	평가자 체크리스트	많은 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과정이나 작업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
Н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특정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작업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
I	일지/저널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작업과정이나 학습결과를 기록하여 평가
J	역할연기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문제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속의 인물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보도록 평가
K	구두발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
L	작업장평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작업장 환경 등 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

4-2. 교육·훈련생 내부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A4용지 1때 이내로 서술)

□ 내부평가 출제, 감독 및 채점
0
O
0
□ 내부평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0
0
□ 기타 내부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
O
(휴먼명 <i>조,</i> 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생 평가시 해당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와 비이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 및 온정주의적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 객관적인 내부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등의 내부평가 참여계획 등 기재
- 기타 내부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노력 등을 기재

V. 학습지원 및 성과관리

5-1. 교육·훈련생 학습지원 (A4용지 1매 이내로 서술)

0	
-	
0	
	(휴먼명조, 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생 지원을 위한 상담, 관찰, 휴게공간 확충,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방과 후 교육 제공 및 학부모 교육 확대 등의 계획 및 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생 지원사항을 중심 으로 작성

5-2. 학습저조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A4용지 1때 이내로 서술)

□ 미이수자 선정방법
0
_
□ 추가 교육훈련 실시 시기 및 방법
0
-
□ 교육·훈련생 추가 평가방법
-
□ 기타 학습저조자 지원계획
0
(휴먼명조, 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생 중 학습저조자 등에 대한 보충학습, 별도 교수 계획 등 대책을 중심으로 작성
 - 교육·훈련과정 운영 중 내부평가 적정수준 미이수자 등에 대한 선정방법, 교육훈련실시방법, 추가평가방법 등을 기재
 - ※ 학습저조자 :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교육훈련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훈련생이나, 내부평가 탈락자 등을 의미

5-3. 교육·훈련생 진로지도

	교육·훈련생	진로지도	실적	(또는	계획)	(A4 용지 1매 이내로 기술)
--	--------	------	----	-----	-----	-------------------

□ 교육·훈련기관의 진로지도 체계
0
0
□ 기타 체계적 진로지도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
O
0
√₹~1~1~ 40D \
(휴먼명조, 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기재
 - 교육·훈련과정 진행 중 쳬계적인 진로상담 등 실질적인 진로지도 계획 수립 여부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체계적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기재

5-4. 학습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A4 용지 1매 이내로 기술)

○ 교육·훈련생에 대한 학습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교육·훈련생 학습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또는 계획) ○
0
□ 학습성과에 대한 교육·훈련생 피드백 체계 ○
○ □ 기타 학습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
0
(휴먼명조, 12P)

- (기본방향) 교육·훈련생에 대한 쳬계적 학습성과관리 쳬계 구축·운영 내용을 기술
 - 내부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기술
 - ※ 성과관리시스템 : 교육·훈련생의 학습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나 근거자료를 체계화한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
- 학습성과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생 피드백 쳬계 기술
- 기타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기록

VI. 산업체 참여

- 6-1.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육·훈련과정 참여도
 - □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실적(총 시간: 000 시간)

기관명	직위	서면	ļ	산업체 현장 전년	활용 현황			
기한경	411	성 명	학력	주요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내용	시간
(주)산업	팀장	홍길동	대졸	· 자격개발팀장 · NCS개발위원	3년	· 기계기술사	출제위원 채점위원 강의(특강)	000H

- (기본방향) 최근 3년간 해당 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실적을 기재
 - 산업체 현장 전문가를 교육·훈련과정 운영과정에 활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활용실적 인정범위: ① 강의 ② 특강
 - ③ 기타 현장 전문가를 교육·훈련과정에 참여시킨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제출이 가능한 경우

□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계획

○ 산업현장전문가 확보 현황

NCS 능형	격단위 수	기존 확보된	신규 확보예정	비고
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	인원	인원	비포
○개	○개	○ 명	○ 명	○명 증가

○ 산업현장전문가 확보계획 인력풀(총 시간 : 000 시간)

능력단위명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예정														
(필수/선택)	소 속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시간	시기													
00	(주)△△금형	부장	홍길동	대졸	· ○ ○ 대 학 교	3년	· 금형기술사	4H	'00년													
(필수)	(1)448	778	ਰਵ ਨ	네글	산학겸임교수	3단	· ㅁ청기호기	411	0월													
00	(주)△▽정밀	대표	x z] =]] \u2	기미교	7] 1] 72 1	김대표	기비교	र योगी ज	기리자	7) ri) 7	1) 3	T 미조	기레고 레조	기리고 리조	레고 레조	김대표 대졸	레포 레조	· ○ ○ 대학교	3년	· 금형기능장	211	'00년
(선택)	(₸)△ ∨ ७ ॿ	4111	검내표	네글	산학겸임교수	312	т 8/10/8	3H	0월													
	(휴먼명조, 10P)																					

- (기본방향)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참여 예정인 산업현장 전문가를 제시 (사전 동의서를 확보하여 첨부)
 - 능력단위별 활용가능한 현장 전문가의 소속, 직위 및 인적 사항을 기재
- 능력단위명(필수/선택)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선택한 NCS 능력단위를 기재
- 산업현장전문가 : 해당 전문가의 소속, 직위, 성명, 학력,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등을 기재
 - 주요경력: 산업체(연구소), 산학겸임교원, 국가기술자격 출제·검정 위원 참여 등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과 관련 있는 경력 기재
 - 자격증 : 해당 교육·훈련과정
 - 시간 : 해당 전문가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강의, 특강 등) 예정인 시간 기재
 - 활용 시기 : 해당 전문가가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강의, 특강 등) 예정인 시기 기재

6-2.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적
	0 1 1		_	= 1

산 업 체		협약	협약 주요내용	협약 체결에
업체명	주요 생산품	체결일	ਬਰ ተውጣሪ	따른 성과

작성 지침

- (기본방향)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관련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실적 이 있을 경우 작성
 - 협약체결, 현장실습 등 해당 교육훈련 과정 관련 기업체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현황을 중심으로 기술
- 협약체결서 등 제반 증빙자료(사본)는 별도 첨부하여 제시

	산업체	능과의	협덕(협약)	능 주진계획	
0					

- (기본방향) 현재 협력체계 보다 발전적인 협력체계 수립계획 등 기재
 - 향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

WI. 교원역량

7-1. 교육·훈련과정 대비 교원 확보

□ 교직원 현황 (A4 용지 1매 이내로 기술)

구 분	정 원	현 원			
T T	\\ \\ \\ \\ \\ \\ \\ \\ \\ \\ \\ \\ \\	교수(사)	외부강사	조교	기타
전체 교원					
해당 교육·훈련과정					
교원					

작성 지침

• (기본방향) 현원에 대한 세부 구성내용은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기재

□ 교원 확보(활용) 계획 (A4 용지 1매 이내로 기술)

O _			
0 -			

작성 지침

• (기본방향) 부족교원 또는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강사 인격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 등을 기재

7-2. 교원의 전문성

교육·훈련과정	과검	교수이	하러	띠	즈Q	겨려
과 귝·준연과 성	선선	ル ーコ	ध्य	긎	一五五	<i>∕</i> ∂ 4

성 명	담당 NCS 능력단위	최종학력 (전공)	산업체 경력 (기관명-기간)	관련 자격증 (또는 출판/강연실적)	비고

작성 지침

- (기본방향)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교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을 기입하고 비고란에는 교원의 '직위'를 기재
 - ※ 최종학력란에는 최종학교명이 아닌 대졸, 대학원 재학중,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등 학력과 전공을 같이 기입하여 작성

□ 교수(교사)의 전	· 	
0		

- (기본방향) 교사 등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세부사항 등을 기재
- 해당 교수(교사)의 전문성, 대외 활동내역 등을 중심으로 기재

7-3. 교원의 연수 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교육·훈련과정 관련 연수 실적

성 명	연수과정 명 (연수장소)	연수기간	주요 연수내용	비고
홍길동	금형기초과정 (○○대)	'12.8.7~8.12 (30시간)	0 0 0	집체
者包含	사이버금형전문가과정 (○○교육원)	'12.8.7~8.12 (20시간)	000	온라인교육

작성 지침

- (기본방향) 소속 교수의 온/오프라인 교육·훈련과정 관련 연수실적을 작성하는 것으로 연수과정명, 연수기간, 연수내용을 작성
 - 연수기간은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연수내용을 작성
- '비고' 란에는 교육형태(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혼합교육 등) 작성

□ 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련 교원 연수계획

연수명	연수시기(기간)	연수목적	연수내용	참여인원

- (기본방향) 향후 교육훈련과정 관련 교원 연수계획을 연수명(가칭),
 연수시기, 연수목적, 참여인원 등을 기재
- 연수내용은 신청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관련하여 교원대상으로 NCS를 활용하여 교과교육운영계획서 작성,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시 주의사항 ◈

□ 작성서식

- 문서작성프로그램(한글 등)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용지 : A4 용지(종 편집)
- 여백
 - 머리말, 꼬리말, 위쪽, 아래쪽 → 12.7mm
 - 왼쪽, 오른쪽 → 25.4mm
- 글씨체 : 휴먼명조(12P)를 기준으로 작성
 - ※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조정하여 작성 가능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료작성시 '작성지침'은 삭제 후 작성
- 증빙자료 등은 해당 항목 뒷쪽에 첨부하여 제본
- 총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제출처

- 접수기간: '16. 8. 22(월) ~ 9. 12(월) 18:00
- 신청서는 첨부파일 제출(jcheol@hrdkorea.or.kr)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16. 9. 12(월), 도착분까지만 인정]

< 교육훈련기관별 접수 유의사항 >

- 직업훈련시설기관 : <a href="hrd-net 전산입력(훈련비 심사") 후 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 교육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 대학 등)은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 접수처(주소)

지역본부	우편번호	주 소	연락처	비고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12	서울, 강원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24	부산, 경남, 울산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26	대구, 경북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26	인천, 경기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4	광주, 전북, 전남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35	대전, 충북, 충남
제주지사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제주

Ⅲ. 과정평가형 자격 Q&A



- 차 례 -

I .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공통)

1-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무엇인가요?
1-2.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112
1-3. 기존 검정형 자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113
1-4. 이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1-5.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115
1-6.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1-7. 과정평가형 자격에도 현재와 같이 시험면제가 있나요? 116
1-8.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117
1-9.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은 무엇인가요? ······ 118

Ⅱ. 교육·훈련과정 지정 관련

2-1.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2-2.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122
2-3.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기준은 다른가요? ····································
2-4. 교육·훈련과정 신청시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2-5.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 등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6. 전문대학에서 기능사 등급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2-7. 과정 지정 신청시 교육 · 훈련과정의 세부 내용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126
2-8. 교육·훈련생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동시에 여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2-9. 교육훈련과정을 한번 지정받으면 동일한 교육·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과정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2-10.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교육 · 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

Ⅲ.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내부평가

3-1. 내부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130
3-2. 내부평가 과제의 출제·평가는 누가 하나요? ······ 130
3-3. 내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131
3-4. 개인 사정으로 내부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32
3-5. 내부평가의 점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6. NCS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능력단위를 묶어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능력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나요? ····································
3-7. 교육·훈련교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134
3-8. 출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나요? ······ 135
3-9. 내부평가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136
3-10. 학습 저조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136
3-11.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은 발급하나요? ······ 136

Ⅳ. 외부평가

4-1.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시행하나요?139
4-2. 외부평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139
4-3. 수험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140
4-4. 외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140
4-5.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재응시 기회가 있나요?141
4-6. 외부평가 응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4-7. 외부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나요? 142
4-8.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143
4-9.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채점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143
4-10. 외부평가 응시에 있어 과제는 모두 응시하여야 하나요? 144
V . 모니터링 관련
5-1. 모니터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146
5-2.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146
5-3.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147

VI. 자격증 발급 관련	
6-1.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4	
Ⅶ. 직업훈련기관 대상	
 7-1.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훈련 과정 신청 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15 7-2. 직업훈련기관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5 7-3. 동일 직업훈련기관에서 동일한 자격을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 15 7-4. 직업훈련기관은 과정 편성 시 자율 선택능력단위 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i2

I.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 (공통)

1-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무엇인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 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1-2.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은 일-교육·훈련-자격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충실한 교육· 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
 - 교육·훈련기간 내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현재 제한된 시간내 한정된 직무 내용을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의 한계를 보완하고,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 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기존 검정형 자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

구 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 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의 비율 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1-4. 이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이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 지라도 법령에 따른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5.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등 여건상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자체 선발기준 등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1-6.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 이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취득하는 방법에 서 차이가 있을 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도탈락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검정형 자격의 응시기준(산업기사, 기사/기능장/기술사에 응시할 경우 법령으로 제시된 학력 또는 경력 등)에 부합하는 경우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1-7. 과정평가형 자격에도 현재와 같이 시험면제가 있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 니다.
 -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있으나,
 -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지구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되며, 교육훈련과정 참여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8.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탈락한 사람은 재응시가 가능한 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 1회 에 한해 추가 응시기회가 부여됩니다.
 - 외부평가에서 합격점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참여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외부평가에 재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히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참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1-9.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은 무엇인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 종목 중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대상 종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입니다.

○ 대상종목 : 국가기술자격 중 총 61종목

- 기존 30종목에 '17년도 대상 31종목이 추가(기사 2종목을 포함) 되어 총 61종목 시행

2017년도 시행대상(총 61종목)				
기사(2종목)	산업기사(19종목)	기능사(38종목)		
① 기계설계기사 ② 메카트로닉스기사	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② 귀금속가공산업기사 ③ 금속재료산업기사 ④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⑤ 기계설계산업기사 ⑥ 기계정비산업기사 ⑦ 농업기계산업기사 ⑧ 사출금형산업기사 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B) 전자계산기기능사 (D) 공유압기능사 (D) 전자기기기능사 (D) 전자캐드기능사 (D) 전자캐드기능사 (D) 전자캐드기능사 (D) 전자캐드기능사 (D) 정밀측정기능사 (D) 제과기능사 (D) 제과기능사 (D) 제행기능사 (D) 제행기능사 (D) 조경기능사 (D) 전장크레인운전기· (D) 전장크레인운전기· (D) 전상기능사		
서비스(2종목)	⑩ 시각디자인산업기사	(ii) 열처리기능사 (2) 측량기능사		
① 컨벤션기획사2급 ② 텔레마케팅관리사	① 실내건축산업기사 ② 용접산업기사 ③ 위험물산업기사 ④ 정밀측정산업기사 ⑤ 정보처리산업기사 ⑥ 치공구설계산업기사 ① 컬러리스트산업기사 ⑧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③ 프레스금형산업기사	① 間口不包기능사 ③ 컴퓨터응용밀링기・ ③ 이용사 ② 컴퓨터응용선반기・ ④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③ 콘크리트기능사 ⑤ 자동차정비기능사 ③ 타워크레인운전기・ ⑥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③ 특수용접기능사 ①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③ 한식조리기능사	③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②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③ 콘크리트기능사 ④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⑤ 특수용접기능사 ⑤ 한식조리기능사 ⑦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에 대한 세부 정보는 NCS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 가능

♡ TIP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대상 종목 선정시 고려사항 ♡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의2에 따라
 -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 ③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심의를 통해 확 정됩니다. Ⅱ. 교육·훈련과정 지정 관련

2-1.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하여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교육· 훈련과정은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가능 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대상 기관 >

-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6.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2.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우선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주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에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 대해 종목별 전문가 집단에서 구성된 지정평가 지원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 서류심사 결과 통과된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 내용 및 시설·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 지원단은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는 종목별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정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 2-3.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다 른가요?
- 과정평가형자격의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은 해당 종목의 직무내용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부합하는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은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 직종별로 제시하는 교육·훈련의 기준입니다.
 - 따라서, 훈련기준의 내용이 편성기준의 내용과 유사할 수 있으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편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4. 교육·훈련과정 신청 시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지정신청 시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정평가형자격 종목별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훈련 시설·장비는 교육·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필수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훈련과정지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부족한 시설·장비에 대한 명확한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계획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과정 지정 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5.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 등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마이스터고 등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서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결과에 따른 검정형과 달리 정해진 교육·훈련기간 내에 NCS 기반의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등을 통해 충실하게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충분한 여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이라면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산 업기사 등급의 교육·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전문대학에서 기능사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문대학에서도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시설 장비 등 필수기준과 세부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대학 에서도 기능사 과정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7. 과정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교육·훈련과정의 세부 내용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 자격종목 및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등 필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 교육훈련 일정, 장소, 교수자 활용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 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경신청서를 산업인 력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변경요청 내역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편성시간 조정 등 당초 지정받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운영할 수 있습니다.

2-8. 교육·훈련생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동시에 여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교육·훈련생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각각의 과정별로 정해진 최소 교육·훈련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 편성 내용을 참조하여 과정 미이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9. 교육·훈련과정을 한번 지정받으면 동일한 교육·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때 과정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훈련과정 지정에 대한 심사 면제제도는 없으며, 동일한 교육훈련과정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10.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 모니터링 중 교육·훈련과정을 부정하게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며, 주무부장관은 위 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5 [지정교육·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 과정 이수 처리를 한경우

Ⅲ.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내부평가 관련

3-1. 교육·훈련과정 중 내부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로 교육훈련이 종료 된 시점에서 실시 하게 되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해당기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단 관할지역본부에 내부평가 실시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실시 후에는 종료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내부평가 과제의 출제·평가는 누가 하나요?

-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수/선택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이 종료될 때마다,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및 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종목별 지원단의 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3. 내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기관 형 편에 따라, 능력단위를 묶어서(교과목 중심평가 등) 시행하 거나, 분할(중간/기말 고사 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 다만,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100점 만점 기준)는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매 평가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과정관리시스템(LM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 [HRD-net(www.hrd.go.kr)-행정정보서비스-과정평가형자격]을 통해 과정 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4. 개인 사정으로 내부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직계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 사유와 함께 실시일정, 참여 대상, 평가방법,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 지역본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5. 내부평가의 점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내부평가의 점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평가는 "교육·훈련과정 개인별 평가표"에 평가하고, 평가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정 능력단위에서 낮은 점수(해당 기관에서 자체 판단)를 획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평가된 점수를 최종 점수로 반영하게 됩니다.

- 3-6. NCS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능력단위를 묶어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능력단위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나요?
-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능력단위 1, 2, 3이 하나의 교과목 A로 편성되었다면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A를 평가할 때, 능력단위 1,2,3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과제를 구성해야 하며, 각 평가결과를 토대로 능력단위 1,2,3의 평가결과를 평가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교과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확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3-7. 교육・훈련교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교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에서 학습모듈로 개발하여 NCS홈페이지(www.ncs.go.kr)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3-8. 출석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별 출석 및 참석시간 등에 대해 서는 과정관리시스템(LM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출석에 관련된 자료는 훈련생의 교육·훈련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능력단위별로 개인별 교육·훈련생의 참여도(출석)를 기록하여 관리·보관해 야 합니다.
 - 그러나, 과정평가형 자격을 위한 별도 출석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추후 모니터링 시 과정관리시스템(LMS) 등록사항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기관 자체 출석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출석 인정 범위는 통상적으로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학사 규정을 준용하고, 훈련기관의 경우 능력개발법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3-9. 내부평가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내부평가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정관리시스템(LM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결과물은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작품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일 1개월 후 폐기해도 됩니다.

3-10. 학습 저조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지정 신청시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11.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하나요?

○ 발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 이 수자에 대한 이수증 등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IV. 외부평가

4-1.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시행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 종목별 지원단은 이외에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 외부평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 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해당 교육·훈련과정 중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 위별 출석율 75% 이상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에 한해 외부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외부평가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외부평가 실시전 반드시 모든 능력단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끝마쳐야 함.
 - ※ 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외부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내부평가 점수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

4-3. 수험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은 최초 교육·훈련과정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별로 한국고용정보원 Hrd-net에 가입 후 원서접수 가능
- 별도로, 외부평가 응시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외부평가 최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외부평가일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확인하여 최종 응시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4-4. 외부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 외부평가는 연 2회* 시행합니다.
 - 각 외부평가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 * 세부 평가일정은 매년 7월 중 공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로 시행

4-5.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재응시 기회가 있나요?

-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1회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에도 외부 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훈련생에 대해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 다만, 재평가 결과 합격기준에 미달 시 추가 재응시 기회는 없습니다.

4-6. 외부평가 응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생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4-7. 외부평가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나요?

-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과 평가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평가문제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 시험일정 등에 대해서는 매년 7~8월 다음연도 시행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4-8.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범위와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 능력단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 능력단위만을 출제범위로 설정합니다.
- 외부평가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평가, 면접,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출제할 예정입니다.
 -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 종목별 시험문제 유형은 NCS홈페이지(www.ncs.go.kr) 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9.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채점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 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합니다.

4-10. 외부평가 응시에 있어 과제는 모두 응시하여야 하나요?

- 외부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 2차 평가의 경우 모든 과제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과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실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V. 모니터링(Monitoring)

5-1. 모니터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교육·훈련과정 질 관리의 핵심사항으로,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모니터링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니터링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6) >

- ①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 ② 교육·훈련생 출석관리
- ③ 교육·훈련기관 내부평가의 적정성
- ④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의 보유 및 활용 여부

5-2. 모니터링 기간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모니터링은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 훈련과정 종료일까지를 모니터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평가일에 맞춰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원제기 및 사건·사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시 모니 터링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5-3.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달리 처리됩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에서 현지 지도를 통해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 운영이 지정된 내용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며, 해당 기관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치사항을 주무부처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거나, 교육·훈련생 내부평가를 실시한 경우 및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소관 주무부처에 통보하게 되며, 주무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VI. 자격증 발급

6-1.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서식 참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합격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력공단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작·발급하게 됩니다.
 - ※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 및 교부 가능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인력공단으로 자격증 재교부를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6-2.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 방문 신규 및 재발급 3,500원 (단, 인터넷 발급 3,100원)

Ⅷ. 직업훈련기관 대상 Q&A

- 7-1.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훈련 과정 신청 시 직업 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과정평가형을 신청하는 직업훈련기관은 <u>신청 마감일</u> (16.09.12) 기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u>훈련기관</u>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u>신청 마감일</u> 기준(16.09.12) 인증등급 미보유 또는 인증유예 등급 직업훈련 기관은 과정평가형 훈련과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7-2. 직업훈련기관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업훈련기관은 ①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제출(산업인력 공단 지부지사제출)과 별도로 ②HRD-Net 전산 신청을 해야 최종 접수 됩니다.
 - 직업훈련기관 HRD-Net 신청 기간 : '16.08.29(월)~'16.09.12(월)
 -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와 <u>동일한 내용으로 HRD-Net</u> 신청이 되어야합니다(전산 미신청 및 신청서 내용과 다를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HRD-Net 신청 매뉴얼은 추후 홈페이지(HRD-Net, KSQA)를 통해 추가 공지 될 예정입니다.

- 7-3. 동일 직업훈련기관에서 동일한 자격을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 <u>직업훈련기관에서 국비지원을 받고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은</u> 자격별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___

① A기관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1개, 웹디자인기능사 : 1개 \Rightarrow 가능

② B기관 : 제과기능사 : 2개 ⇒ 불가능(1개만 신청가능)

7-4. 직업훈련기관은 과정 편성 시 자율 선택능력단위 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직업훈련기관의 과정평가형 과정은 ①편성기준에서 제시한 필수와 선택 능력단위에서 우선 편성하되, ②선택 능력단위 중 자율 선택 능력단위*로 편성 또한 가능합니다. 단, 자율선택능력단위와 훈련 내용(목표 등)과의 적정성은 심사 시 검토되어집니다.
 - * 자율 선택능력단위란 자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u>필수, 선택 능력</u> 단위를 제외한 797개 NCS 직종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말함
 - * NCS사이트(www.ncs.go.kr) 자료실 → 훈련기준 21번 게시글(16.04.12)에서 능력단위 확인 가능
 - 자율 선택능력단위는 선택 능력단위 편성 훈련시간의 50%까지 가능

< 예시 >

- ex) 선택능력단위 편성 훈련시간이 총 180시간일 경우,
- ①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선택능력단위 최소 90시간 이상 편성
- ②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필수, 선택 능력단위를 제외한 797개 NCS 직종 능력단위에서 최대 90시간까지 편성 가능 (내용 및 목표와 자율선택능력단위 편성 적정성은 심사 시 검토)
 - (참고) 과정평가형자격 과정 HRD-Net 전산 신청 시 비 NCS 교과 편성은 불가함